

Legislative & Policy Weekly

세종Law Focus

주간 입법·정책 동향

Vol.248 | 2024.08.12. (2024.08.05~08.11)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2. 입법(행정)예고 법안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1. 상임(특별)위원회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247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08.05~08.11)

Contact: 백대용 변호사(파트너)

02-316-4630, 010-3248-5382
dybaek@shinkim.com

Summary

【정부의 주요 정책】

<정부(관계부처 합동)>은 서울·수도권 아파트 매매시장은 상승세가 확대되고, 非아파트·지방 주택 매매시장은 침체되는 차별화 양상이 발생하고, 주택공급이 전반적으로 위축된 가운데, 특히 전세사기 여파로 非아파트 공급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하에 **지역별·유형별 맞춤형 대응과 주택공급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8월 8일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향후 6년간 서울과 수도권에 총 42만 7천호 이상의 주택과 신규택지를 공급할 예정으로, ①그린벨트 해제(+8만호), 3기 신도시(+2만호) 등 21만호 추가 공급, ②재건축·재개발 촉진특례법(가칭)을 제정해 재건축·재개발 추진 기간을 3년가량 앞당겨 향후 6년간 서울 도심 등 17.6만호의 주택 조기 착공 및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25년까지 착공하는 경우 미분양 주택을 LH가 매입하는 4.1만호 등 21.7만호 조기 착공, ③非아파트 매입임대주택 종전 계획 12→16만호 이상으로 대폭 확대 등을 담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재생에너지 핵심 전원으로 부상하는 해상풍력 시장 확대에 대응키 위해 정부가 시장, 제도 및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기반 마련을 적극 추진하기로 함. 이에 **‘해상풍력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해상풍력 경쟁입찰 로드맵」을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①매년 4/4분기에 시행했던 풍력 경쟁입찰을 2/4분기로 앞당기고, 입찰수요를 고려하여 필요시 4/4분기에 추가 공고를 할 계획이며, '24년 하반기부터 '26년 상반기까지 2년간 약 7~8GW 수준의 물량에 대해 해상풍력 입찰 공고 추진, ②입찰 평가에 대해서는 2단계 평가 도입, ③기존 고정식 해상풍력과 함께 금년에는 부유식 해상풍력 별도 입찰시장을 신설하고, 신재생 공급의무화(RPS) 제도 개편 추진에 맞추어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 참여사업 목표 비중을 제시하며, '25년 상반기에는 공공주도형 별도 입찰시장 신설 추진 등을 담고 있습니다.

【입법(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에게 영양에 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기 위하여 영양표시를 하여야 하는 대상을 EU, 미국, 캐나다, 일본, 중국 등 주요 국가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확대하고, 카페인을 일정량 이상 함유한 액체 식품등에 대해 고카페인 함유 등 표시를 하도록 하던 것을 과라나를 원재료로 사용하여 일정량 이상의 카페인을 함유한 고체 식품까지 확대하여 소비자가 고카페인 식품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주의사항 표시를 강화하는 한편, 냉동식품에는 ‘이미 냉동되었으니 해동 후 다시 냉동하지 마십시오.’라는 주의사항을 의무적으로 표시하여야 하나, 얼음, 또는 아이스크림 등 바로 섭취하는 식품으로서 해동이 불필요한 냉동식품에는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등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법률 발의 및 제출안】

이사에게 주주를 공정하게 대할 의무를 부여하고, 주주총회에서 소수주주만으로 결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면책을 줌으로써 소수주주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7인)**」 ,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 제한, 불법 공매도에 대한 형사처벌·제재 강화 등 근본적인 공매도 제도개선을 통해 공매도의 불법·불공정 문제를 해소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의원 등 12인)**」 ,

금융상품의 화상권유판매 방식과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이 금융상품의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방식과 동일하게 규제될 수 있도록 현행법에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

현행법에 민감정보의 유형으로 지문·얼굴·홍채 및 손바닥 정맥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한 정보를 추가하여 생체정보 관련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4인)**」 ,

CVC가 투자조합을 결정하는 경우 지주회사 체제 외부자금 유치 한도를 현행 40%에서 최대 50%까지로 늘리고 총자산 중 해외투자 금액 비중을 현행 20%에서 30%까지 상향하는 한편, SOC 등 투자회사 등의 임원을 겸임하는 기업결합은 신고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의원 등 10인)**」 ,

티몬·위메프 사태의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 판매대금 지급기한 설정, 통신판매중개자가 판매대금을 임의대로 유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등 온라인 전자상거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1건의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1인)**」 그리고 총 3건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박정현·고동진의원) , 그리고 1건의 「**전자금융거래법 일부 개정 법률안(김남근의원 등 35인)**」 등이 발의되었습니다.

과세표준 구간을 현행 4단계에서 3단계로 단순화하고, 법인세 최고세율을 24%에서 22%로 하향 조정하기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0인)**」 ,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과 별도로 발주하는 설계·기획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를 참여시킬 수 있도록 예외를 신설하는 한편, 대형 공공소프트웨어 사업에 대해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참여를 허용함으로써 소프트웨어사업자간 경쟁 활성화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전체 공공소프트웨어 사업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의원 등 12인)**」 ,

디지털콘텐츠 제공 시 정보통신망 이용·제공에 관하여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을 부과하거나 계약 체결을 부당하게 지연·거부하는 등의 행위를 제재해 국내외 부가통신사업자(CP)간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정보통신망 이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의 근거를 마련해 망 사용 추이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망 이용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김우영의원 등 25인)**」 ,

수사기관들의 권한남용 방지와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에 대해서도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과 같이 법원의 ‘영장주의’를 도입하고,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사실 통지 유예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뤄질 수 있도록 하며, 유예기간도 현행 6개월에서 3개월로 한정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4인)**」 ,

배터리 등을 이용하는 장비와 배터리 제조 및 보관 시설에는 전용 소화기 및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며, 소방청장이 화재 안전기준을 설정하도록 하여 금속화재에 대한 소화기 등 소방시설 개발 및 보급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1인)**」 ,

고의로 불법프로그램 등을 이용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여 게임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6인)**」 ,

산업기술유출범죄에 대한 역외규정 적용, 의회에 대한 보고의무, 목적범이 아닌 고의범 처벌규정 마련, 민사적 구제 강화 등을 법률에 규정하여 처벌의 법적 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등 11인)**」 ,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의 의무휴업일을 평일이 아닌 공휴일 중에서만 지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8인)**」 ,

시설의 소유자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화재알림설비, 소화설비 등의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기 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의원 등 10인)**」 ,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의 옥내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방화셔터, 소화수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옥내 전기자동차 화재에 대한 예방과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3인)**」 , 및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4인)**」 ,

반도체 산업 전반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고, 대통령 소속 반도체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및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 반도체산업특별회계 설치 등을 규정함으로써 반도체 산업기반시설 구축에 관한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고 우리나라가 글로벌 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언주의원 등 11인)**」 ,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재직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에 대하여도 지연이자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임금 채권의 시효를 5년으로 늘리는 한편, 고의·반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청산할 의지가 없는 ‘상습체불사업주’의 개념을 도입하고, 이에 대한 정부지원 등 제한, 공공입찰 시 불이익 부여, 신용제재 확대·강화 및 출국금지, 반의사불벌죄 적용 제외 등 제재조치를 더욱 강화와 함께 상습적으로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업주에게는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등의 3배 이하 금액을 지급하도록 근로자가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6인)」등이 입법발의 되었습니다.

【주요 국회의사일정(안)】

금주 (8/12~8/16) <법제사법위원회>는 검사(김영철)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8/14), <교육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는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청문회, 의과대학의 발전을 위해 교육부 청문회 요청에 관한 청원 등에 대한 연석회의(8/16),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불법적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2차 청문회(8/14), <외교통일위원회>는 2023회계연도 결산 상정, 현안질의 등에 대한 전체회의(8/13) 등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목 차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바로가기](#)

-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관계부처 합동) 8
- 「해상풍력 경쟁입찰 로드맵」 발표(산업통상자원부) 15
- 금융 리스크 점검회의 개최(금융위원회) 16
- 첨단산업기업 간담회 개최(금융위원회) 17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바로가기](#)

-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산업통상자원부) 19
-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산업통상자원부) 20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산업통상자원부) 20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산업통상자원부) 21
-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국토교통부) 21
-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식품의약품안전처) 22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식품의약품안전처) 23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금융위원회) 23

2. 입법(행정)예고 법안

[바로가기](#)

- 농어업경영체법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해양수산부) 25
- 농어업경영체법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해양수산부) 25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식품의약품안전처) 26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바로가기](#)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7인) 27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의원 등 12인) 27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3인) 29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29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30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4인) 30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의원 등 10인) 31
-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1인) 31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등 11인)	34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의원 등 13인)	34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4인)	35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35인)	35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0인)	36
•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의원 등 11인)	36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4인)	37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의원 등 13인)	37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의원 등 14인)	37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0인)	38
•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의원 등 12인)	38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의원 등 17인)	39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김우영의원 등 25인)	39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4인)	40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1인)	40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문석의원 등 13인)	41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의원 등 11인)	41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6인)	42
•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윤준병의원 등 10인)	42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등 11인)	44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8인)	45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3인)	45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의원 등 10인)	46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3인)	46
•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4인)	47
•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언주의원 등 11인)	47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49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6인)	49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의원 등 10인)	50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바로가기](#)

1. 상임(특별)위원회	52
--------------------	----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바로가기](#)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247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55
--	----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08.05~08.11) [바로가기](#)

• [일본] 라이선스 조항에 대한 일본 판결 (2)	56
------------------------------------	----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계부처 합동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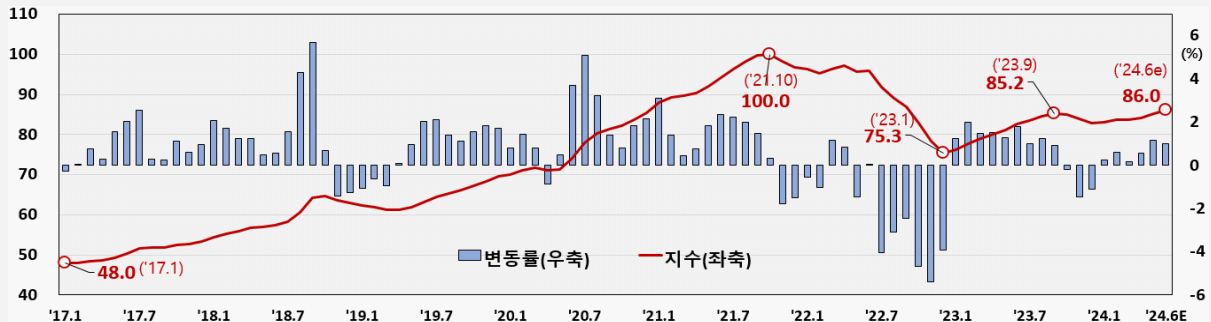
- 그린벨트 해제(+8만호), 3기 신도시(+2만호) 등 21만호 추가 공급
- 정비사업 신속화, 미분양 매입확약 등 21.7만호 조기 착공
- 非아파트 매입임대주택 종전 계획 12 → 16만호 이상으로 대폭 확대

2024-08-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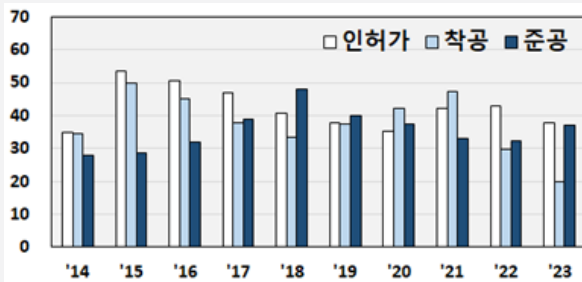
정부는 「제8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논의한 바, **부동산시장 안정화의 핵심은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공급과 적정 수준의 유동성 관리에 있으며, 이에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주택수요를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힘

정부는 서울·수도권 아파트 매매시장은 상승세가 확대되고, 非아파트·지방 주택 매매시장은 침체되는 차별화 양상이 발생하고, 주택공급이 전반적으로 위축된 가운데, 특히 전세사기 여파로 非아파트 공급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하에 지역별·유형별 맞춤형 대응과 주택공급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향후 6년간 서울과 수도권에 총 42만 7천호 이상의 주택과 신규택지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먼저 서울·수도권 중심 선호도가 높은 입지에 21만호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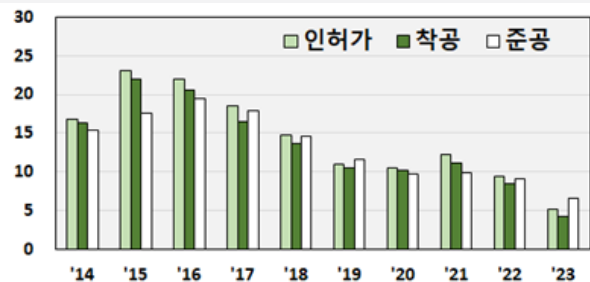
< 월간 실거래가지수 및 변동률(서울 APT, 院) >



< 아파트 공급추이('14~'23) >



< 非아파트 공급추이('14~'23) >



그리고 정부는 공급계획이 이미 확정된 21.7만호 규모의 주택을 실수요자에게 최대한 조기에 공급하겠다고 밝히며, **재건축·재개발 촉진특례법(가칭)**을 제정해 **재건축·재개발 추진 기간을 3년가량 앞당겨 향후 6년간 서울 도심 등 17.6만호의 주택을 조기에 착공하고,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25년까지 착공하는 경우 미분양 주택을 LH가 매입하는 등 4.1만호가 조기 공급되도록 유도하겠다고 발표하였음**

그리고 수요 측면에서는 시중 유동성과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고 투기수요를 차단하겠다고 밝히며 **9.1일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시행하는 등 DSR 규제를 점진적으로 내실화·확대**해 나가고, 가계대출 전반의 증가 속도와 리스크 요인에 대한 모니터링·분석을 강화하고, 이를 토대로 조만간 추가 거시건전성 규제 방안을 마련하고, 투기거래 근절과 시장교란행위 단속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 현장 점검반을 즉시 가동키로 하였다고 밝혔음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패러다임을 규제에서 지원으로 확실하게 전환하고 추진 속도도 획기적으로 높이기로 하였으며, 또한, 국민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온 **非아파트 시장을 정상화하고, 3기 신도시와 수도권 공공택지의 주택공급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공공이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고, 서울 인근 그린 벨트를 해제하여 양질을 주택을 공급하기로 하였음**

서울시는 '미래세대를 위한 자연환경 보존과 여가 휴식 공간 확보'라는 기본 원칙은 지키되, 미래세대의 주거 마련을 위해 개발제한구역해제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에 동참키로 하고, **정비사업에 대해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非아파트 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신축 매입임대 확대를 병행하겠다고 하였음**

그리고 금융위원회는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갖는' 대출관행을 일관되게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힘

주요 내용으로는

(1) 도심 내 아파트 공급 획기적 확대

① 정비사업 속도 제고 및 부담 경감

- 패러다임을 규제에서 지원으로 확실하게 전환하기 위해 (가칭)「재건축·재개발 촉진법(특례법)」을 제정하고, 진행 중인 재건축·재개발 서울 37만호 추진 가속화
- 절차 간소화를 통한 사업 속도 제고, 공공 지원을 통한 사업 불확실성 해소, 세제·금융 지원 강화, 도시·건축 등 정비사업 관련 규제 완화 등

<용적률 추가 허용(안)>

구분	역세권 정비사업	일반 정비사업
현행	▶ 법적상한의 1.2배까지 추가 허용 (예: 3종 주거지역 → 360%)	▶ 법적상한까지 추가 허용 (예: 3종 주거지역 → 300%)
개선	▶ 법적상한의 1.3배까지 추가 허용 (예: 3종 주거지역 → 390%)	▶ 법적상한의 1.1배까지 추가 허용 (예: 3종 주거지역 → 330%)

②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

- 금년 11월 2.6만호+α 규모의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를 선정하고, '25년 이후 선정 물량도 정비계획 신속 수립 등 순차 정비
- '26년 최초 인허가 → '29년까지 인허가 8.8만호, 착공 4.6만호 추진

- 기본방침·1기 신도시별 기본계획 공개, 미래도시편드 추진, 전국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 본격 수립

(2) 빌라 등 非아파트 시장 정상화

① 공공 신축매입 공급 확대

-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공 신축매입을 '25년까지 11만호+α 집중 공급(LH 신축든든전세 포함)하고, 서울 지역의 경우, 非아파트 공급 상황이 정상화될 때까지 공공주택을 전월세로 무제한 공급하고, 세제·대출 등 지원으로 사업성 및 속도 제고

② 분양전환형 신축매입 신규 도입

- 최소 6년 임대 후 분양전환 가능한 신축매입 주택을 새롭게 도입하여 '26년부터 입주 가능한 도심 내 신축 아파트 등을 신속하게 공급
- 공공 신축매입 11만호 중 최소 5만호를 분양전환형 신축매입으로 공급

③ 非아파트 시장기반 정상화

- 위축된 非아파트 시장이 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사업자, 임대인, 실수요자, 임차인 등에 대한 세제·청약 등 맞춤형 지원방안 마련
- (건설사업자) 소규모 건설사업자 취득세 중과 완화

<주택신축판매업자 취득세 중과배제 요건 완화(안)>

기준	현행	개선
대상	멸실 후 신축을 목적으로 구입한 주택	
요건	1년 내 멸실 + 3년 내 신축 및 매각	1년 내 멸실 + 3년 내 신축 + 5년 내 매각
세율	취득세 중과(12%) 않고 일반세율(1~3%) 적용	

- (등록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일몰 연장 및 대상·범위 확대
 - ▷ 1호만으로도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6년 단기 등록임대를 도입하여 소형주택 공급 활성화(아파트 제외)
 - ▷ 임대사업자의 등록임대주택(장기일반·공공지원)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일몰기한을 연장('24.12 → '27.12)
 - ▷ 등록임대 유형으로 신설('23.9)된 임대형기숙사(공유주택)를 취득세·재산세 감면 대상에 신규로 포함
- (임대인) 임대수요 정상화
 - ▷ 신축 소형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종부·양도세 산정 시 주택수 제외하는 기간을 '27.12월까지 확대(준공·취득일 기준, 現 ~'25.12월)
 - ▷ 기축 소형주택을 '27.12월까지 구입하여 등록임대주택으로 등록(매입임대)하는 경우, 세제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
- (실수요자) 주거사다리 역할 회복
 - ▷ 생애 최초로 소형주택을 구입한 자는 취득세 감면한도 확대(現 200만원 → 改 300만원, '25년까지 감면 후 2년 연장 추진)
 - ▷ 빌라 등 非아파트* 구입자가 청약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非아파트 범위를 확대

- (임차인) 非아파트 정보 제공 강화

▷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안심전세앱에서 임대인 주택보유 건수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④ 뉴:빌리지 사업 본격 추진

- 노후 저층 주거지에 주차장 등 아파트 수준의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주택 정비를 위한 정책지원 병행 → '29년까지 주택 5만호 공급 추진

< 지원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

주차장	도로	공원	생활·안전	편의·복지
세대당 1대 수준 설치	소방도로(4m ↑) 확보 및 맹지해소 중점	「공원녹지법」에 따른 생활권 공원 등	쓰레기처리장, CCTV, 보안등, 방재시설 등	5만㎡당 1개소 수준 복합화 설치 (돌봄·체육시설 등)

⑤ 非아파트 공공임대 추가 공급

- 신축 주택뿐만 아니라 기축 주택도 활용하여 전세사기로부터 안전하고 임대료 등이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1.6만호 추가 공급

(3) 기 발표 수도권 공공택지 신속 공급 확산 부여

- ① 수도권 공공택지에 22조원 규모 미분양 매입확약 제공
- ② 청약 조기화 등을 위한 後분양 조건부 공공택지의 先분양 허용
- ③ 공공택지 내 주택공급 조기화 지원
- ④ 기발표 수도권 공공택지 지구지정 조기화

(4) 서울·수도권 신규택지 발표 및 물량 확대

- 미래세대를 위해 서울과 서울 인근의 그린벨트 등을 활용하여 합리적가격의 주택공급을 추진하고, 토지이용 효율성 제고 등으로 주택 추가 공급

- ① 서울 및 서울 인근 신규택지 후보지 8만호 발표
- ② 공공택지 이용 효율화로 2만호 이상 추가 공급

(5) 주택공급 여건 개선

① 공급규제 혁파 및 정책 지원 강화

- 주택공급을 가로막는 '손톱 밑 가시'를 꾸준히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고, 인허가·착공 등 촉진을 위해 PF보증 확대, 지자체 협의회 운영 등 추진
- 정상사업장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PF대출 보증 공급 규모를 당초 대비 5조원 추가 확대 (30→35조원)
- 주택건설 장애요인 해소
- 주택공급 규제 완화

- ▷ (면적제한) 수요가 많은 중소형평형 도시형생활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현행 건축면적 제한 완화 (60→85㎡ 이하)
- ▷ (인수가격) 소규모정비사업 등 용적률 완화에 따라 건설해야 하는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표준건축비 →기본형건축비 80%)
 - * 조합은 완화 용적률의 50%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공(지자체 · 공기업)에 매각 의무
- ▷ (용도지역) 노후·저층주거지의 정비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관리지역 내 용도지역을 최대 준주거까지 상향 허용

② 지방 미분양 해소

- 지방 주택건설사업 정상화를 위해 CR리츠, 지방 미분양 보증 등을 활용하여 미분양을 해소하고, 지방의 신규 주택 공급 여력을 확보

(6) 건전한 부동산 시장 환경 조성

- ① 수도권 주택거래 합동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 실시
- ② 서울 GB 및 인접지역 정밀 기획조사 실시
- ③ 토지거래허가구역 이용실태 조사 실시(서울시)

< 기대 효과 >

① 국민 선호도 높은 입지에 양질의 우량주택 21만호^{+a} 추가 공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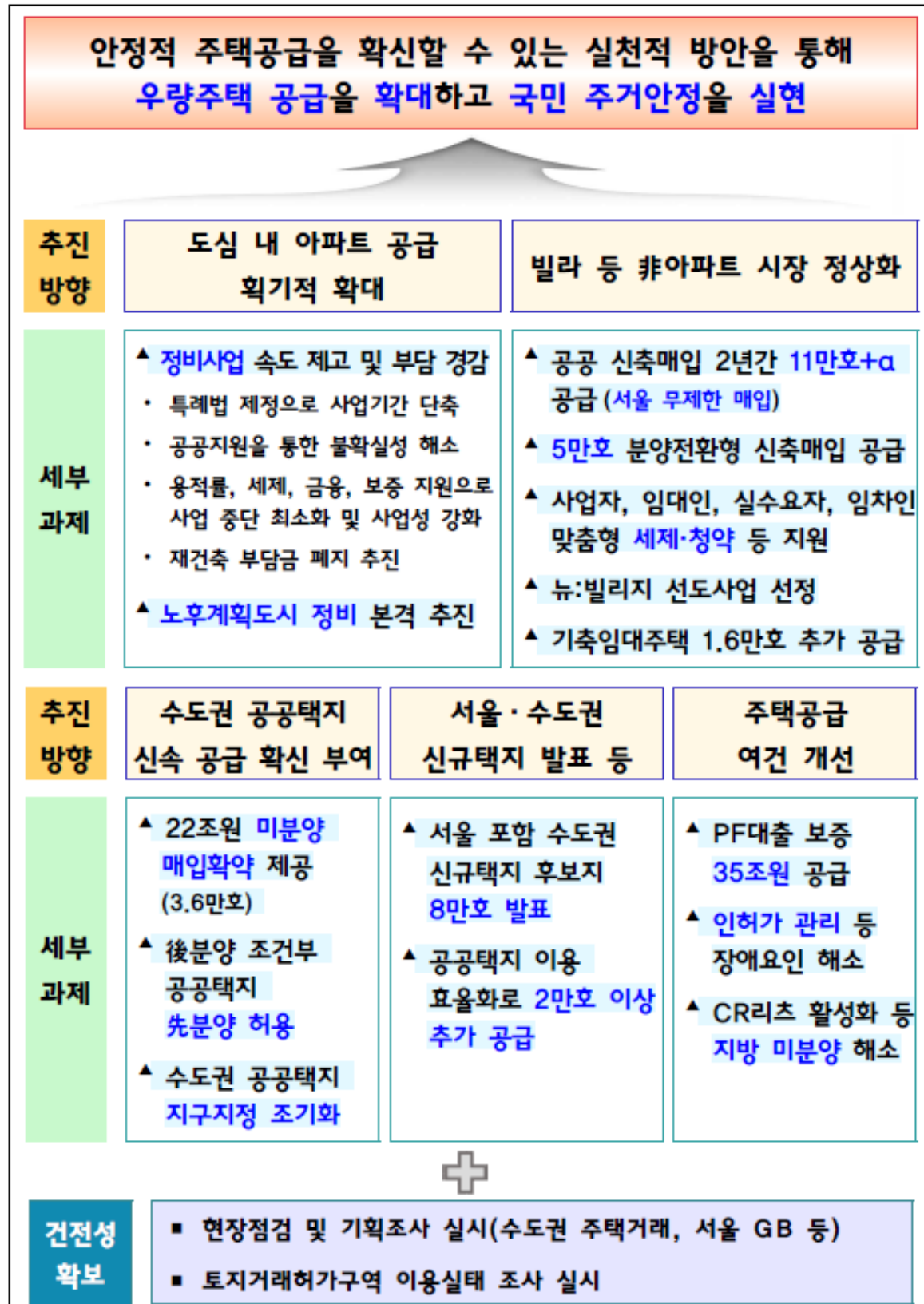
신규택지 ^{서울수도권} 8만호 신규발굴 (‘24~‘25년)	+	토지 효율성 제고 ^{수도권} 2만호 ⁺ 추가확대 (‘25~‘29년)	+	신축매입 ^{수도권 위주} 11만호 매입입주 (‘24~‘28년)	+	무제한 신축매입 ^{서울} 무제한 매입입주 (‘24년~)	⇒	수도권 21만호^{+a} 추가공급
신규택지	▶ 서울을 포함한 우수한 입지의 수도권 신규택지 8만호를 신규 발굴하고, 지구 지정 등 본격적인 행정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							
토지 효율성 제고	▶ 기존에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 대해 유보지 활용 등 토지이용을 효율화하여 2만호 이상 추가 확대							
신축매입	▶ 수요가 많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공이 신축매입주택 11만호를 공급하고, 서울은 非아파트 공급 상황 정상화 시까지 무제한으로 매입하여 공급							

② 기 추진 중인 사업들의 소요기간을 대폭 줄여 21.7만호 조기공급

정비사업 ^{서울} 13만호 조기착공 ('24~'29년)	+	1기 신도시 ^{수도권} 4.6만호 조기착공 ('27~'29년)	+	매입확약 ^{수도권} 3.6만호 조기착공 ('25년)	+	先분양 전환 ^{수도권} 0.5만호 조기분양 ('24년)	⇒	수도권 21.7만호 신속공급
정비사업	▶ 「재건축·재개발 촉진법(특례법)」 제정을 통해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사업성을 대폭 강화하여 서울 정비구역에서 '29년까지 13만호 조기 착공							
1기 신도시	▶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 용적률 상향, 각종 금융·정책지원, 안전진단 면제 등 전폭적인 공공지원을 통해 '29년까지 4.6만호 조기 착공							
매입확약	▶ 민간에 분양된 공공택지에 대해서 '25년 착공을 조건으로 LH가 미분양 매입확약을 제공함으로써 '25년까지 3.6만호 조기 착공 유도							
先분양 전환	▶ 後분양을 조건으로 민간에 분양된 공공택지에 대해서 先분양 전환을 허용함으로써 '24년 내 0.5만호 조기 분양 유도							

이번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향후 6년간 수도권에 42.7만호^{+a}의 우량주택을 공급하여 국민들에게 안정적 주택공급에 대한 확신을 제공

< 추진 방향 >



재생에너지 핵심 전원으로 부상하는 **해상풍력 시장 확대에 대응키 위해 정부가 시장, 제도 및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기반 마련을 적극 추진하기로 함**. 산업통상자원부는 ‘해상풍력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해상풍력 경쟁입찰 로드맵」을 발표함

이는 지난 5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 발표에 따른 두 번째 실행계획으로, 지난달 「산단태양광 활성화방안」에 이어 속도감 있게 후속정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① **보급확대**(고정식, 부유식), ② **산업생태계 조성**(평가체계, 공공), ③ **비용인하**(가격경쟁) 간의 **균형 있는 해상풍력 보급 추진 등과 같은 전략하에 마련되었음**

2030년 국내 풍력 설비 보급은 18.3GW에 이를 것으로 전망(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 되고 있어 향후 규모 있는 해상풍력 경쟁입찰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정부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산업생태계 조성, 가격경쟁 간의 균형 있는 해상풍력 보급을 추진할 계획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매년 4/4분기에 시행했던 풍력 경쟁입찰을 2/4분기로 앞당기고, 입찰수요를 고려하여 필요시 4/4분기에 추가 공고를 할 계획이며, '24년 하반기부터 '26년 상반기까지 2년간 약 7~8GW 수준의 물량에 대해 해상풍력 입찰 공고 추진**

< 해상풍력 입찰 공고물량 전망(안) >

구분	'24.下(1회)	'25(1~2회)	'26.上(1회)	합계(3~4회)
(일반) 고정식	1~1.5GW	2~2.5GW	1~1.5GW	4.5~5GW
(별도) 부유식*	0.5~1GW	0.5~1GW	1~1.5GW	2.5~3GW
(별도) 공공주도형	-	'25년 상반기 도입 추진		
합계	1.5~2GW	3~3.5GW	2~3GW	7~8GW

* ('24.下, 부유식) 입찰공고 후 낙찰사업자가 없을 경우 '25년으로 공고물량 이월

- ② **입찰 평가에 대해서는 2단계 평가 도입**

- 1차 평가에서 비가격지표로 공고물량의 120%~150% 범위에서 선정하고, 2차 평가에서 가격 경쟁을 추가하여 1차 점수(비가격지표)와 2차 점수(가격지표)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최종 선정
- 비가격지표 배점을 40점에서 50점으로 확대하고, 거점·유지보수, 안보·공공역할 측면도 평가에 추가로 반영

< 풍력 경쟁입찰 평가지표 개선안 >

구분	현행(1단계)			개선(2단계)		1차	2차
가격지표	입찰가격	60	60	입찰가격	50 (△10)	-	50
비가격 지표	주민수용성	8	40	주민수용성	4 (△4)	50	50
	산업경제효과	16		산업경제효과 (안보·공공 포함)	26 (+10)		
	<신설>			거점·유지보수	8 (+8)		
	국내사업실적	4		<삭제>	0 (△4)		
	사업진행도	4		사업진행도	4		
	계통수용성	8		계통수용성	8		

* 평가지표 재검토 후, 변별력이 낮은 지표는 추가 조정(삭제 또는 축소) 가능

- ③ 기존 고정식 해상풍력과 함께 금년에는 부유식 해상풍력 별도 입찰시장을 신설하고, 신재생 공급의무화 (RPS) 제도 개편 추진에 맞추어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 참여사업 목표 비중을 제시하며, '25년 상반기에는 공공주도형 별도 입찰시장 신설 추진

< 해상풍력 설비용량별 준공기한 개선안 (단위: 개월) >

설비용량	100MW 이하	중규모(100~300MW)	대규모(300MW 초과)
현행	54	60	
개정(안)	60	72	78

금융위원회

금융 리스크 점검회의

- 부채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강조

2024-08-05

금융위원회는 거시·금융전문가들과 함께 금융리스크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가계부채, PF부채,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제2금융권 건전성 문제 등 4대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금융위원장은 ①우선 현재 진행중인 부채 대응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며, ②「부채 중심에서 자본 중심으로의 금융 구조 전환」을 위해 당면한 정책 과제 추진에 속도를 낼 것이며, ③부채 대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와 금융권이 협력하여 채무부담을 조정하고 재기를 지원하는 한편, 서민금융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주요 내용으로는

① 가계부채 문제

- 향후 금리 및 부동산 시장 상황과 연계하여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될 우려가 있는 만큼, 가계부채 증가 속도 조절과 건전성 관리에 대한 정책적 입장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
- 특히 9.1일로 예정된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이나 DSR의 점진적·단계적 확대 적용 등은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의지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는 만큼, 선제적이고 적시성 있는 정책 추진이 중요

② 부동산 PF 문제

-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장 평가와 그 후속 조치가 PF부채 연착륙에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는 데 의견이 모아졌으며, 연착륙 과정에서 금융권과 건설업계의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 필요
- 사업장별 평가를 기초로 사업성에 기반한 관리를 일관성 있게 진행

③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문제

- 소상공인에 대한 만기연장 등 금융지원 조치들과 함께,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누적된 채무를 조금씩 줄여 나갈 수 있도록 경영부담 완화, 매출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하되, 상황이 어려운 경우에는 새출발기금 등 보다 적극적인 채무 조정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실질적인 재기 지원 필요

④ 제2금융권 건전성 문제

- 제2금융권 문제가 PF, 소상공인 부채 등 여타 리스크 요인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는 연체율이 안정되는 데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
- 다만, 과거 위기 때와는 달리 각 금융회사들이 선제적·적극적인 연체채권 정리에 나서고 있으며, 총당금 적립 등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는 만큼, 향후 금리안정 기조 하에서 건전성 지표들이 점차 안정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

금융위원회

첨단산업기업 간담회 개최

- 첨단산업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유지 및 경쟁우위 확대에
금융 적극 뒷받침

2024-08-06

금융위원회는 ‘첨단산업 기업 간담회’를 개최하여,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원전 등 첨단산업을 영위하는 대·중견·중소기업을 직접 만나 기업들의 경영상 애로사항을 듣고 첨단산업에 대해 지속가능하고 충분한 지원체계를 만들어 나가기로 함

간담회 참석자들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적극적 자금지원과 관심 요청을 요청하며 시설투자를 위한 정책자금 출시, 공정증설 시 세제혜택 등 제도적 유인책 검토 ▶원전산업에 대한 적극적 자금지원 및 신속하고 예측가능한 정책지원 등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대해 금융위원장은 첨단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우리 경제의 미래가 있는만큼, 정부와 전 금융권은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총력지원해야 한다면서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청취하고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계속 고민해 가겠다는 입장을 밝힘

<반도체 생태계 지원 프로그램 및 AI 지원상품 추진현황>

지원내용	총 지원규모	지원실적
① 반도체 등 첨단산업 저리대출 프로그램	3년 17조원 (’25~’27년)	7.1일 출시 7.31일까지 7개사 968억원 (15개사 이상 협의 중)
② 반도체생태계펀드 규모 확대	1.1조원	예산실 협의 중 1호기업 투자심의 진행
③ 산은 초격차 프로그램 內 ‘AI 분야’ 신설	3조원	7.4일 출시 (3개사 이상 협의 중)
④ 산은 ‘AI코리아 펀드’ 신설	0.5조원	운용사 선정 진행 중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내용	시행일자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	2024-08-07 시행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공공·민간의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개된 산업재산 정보를 이용·제공 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의 안전보장 등과 관련된 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출원 중인 산업재산 정보를 특허청장이 이용하거나 관계 국가행정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0200호, 2024. 2. 6. 공포, 8. 7. 시행)됨

이에 따라,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공개된 산업재산 정보의 이용·제공, 국가 안전보장 등을 목적으로 이용·제공하는 산업재산 정보의 내용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제2조 및 제3조)
 - 특허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지침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전년도 시행계획의 평가, 해당 연도의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 방향 등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함
- ② 공개된 산업재산 정보의 이용 및 제공 (제7조)
 - 특허청장이 공개된 산업재산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미래유망기술의 발굴·이전 관련 동향, 과학·산업기술·디자인 분야 관련 연구자 등의 산업별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정보 등을 조사·분석하기 위해 산업재산 정보를 이용하거나 그 조사·분석의 결과를 제공하는 경우 등으로 정함
- ③ 국가 안전보장 등 목적 산업재산 정보의 제공 (제8조)
 - 특허청장은 출원 중인 산업재산 정보 중 국가전략기술 및 방위산업기술 등의 기술과 관련된 산업재산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국가행정기관에 국가 안전보장 등의 목적으로 산업재산 정보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정보의 활용 목적 및 보안성 등을 검토하여 제공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 ④ 산업재산진단기관의 지정 (제9조)
 - 특허청장은 업무의 수행 및 보안에 필요한 전산장비 등의 시설과 전기·전자, 기계·금속 등 산업재산 분야별 진단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갖춘 국공립 연구기관 등을 산업재산진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

2024-08-07 시행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허청장은 산업재산의 출원, 심사, 심판 재심 및 그 밖의 절차에서 제출 또는 생성된 문서를 전자화하는 업무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재산진단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20200호, 2024. 2. 6. 공포, 8. 7.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809호, 2024. 8. 6. 공포, 8. 7. 시행)이 제정됨

이에 따라, **산업재산문서의 전자화 대상 서류, 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의 위탁 기준 및 산업재산진단기관 지정신청서·지정서의 서식을 정하는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산업재산문서의 전자화 대상 서류 (제2조)

- 특허청장이 전자화할 수 있는 산업재산 정보 관련 문서를 「특허법」에 따른 특허출원의 발명에 대해 비밀 취급명령을 받은 경우의 관련 서류, 전자문서첨부서류 등 물건제출서 및 특허취소신청사실 등의 증명신청서 등으로 정함

② 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의 위탁 기준 (제4조)

- 특허청장은 출원 중인 산업재산에 관한 비밀유지에 적합한 보안시설을 갖추고, 전산정보처리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5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을 보유하는 등의 기준에 적합한 기관 또는 단체에게 산업재산문서 전자화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

③ 산업재산진단기관의 지정신청서 및 지정서 (제6조)

- 산업재산진단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자가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산업재산진단기관의 지정신청서와 특허청장이 산업재산진단기관을 지정한 경우 발급해야 하는 산업재산진단기관 지정서의 서식을 정함

산업통상자원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4-08-07 시행

바이오연료, 재생합성연료 등 친환경 석유대체연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 및 해당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석유대체연료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며, 석유정제업자에게 친환경정제원료 사용내역의 보고 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 개정(법률 제20201호, 2024. 2. 6. 공포, 8. 7. 시행)됨

이에 따라, 석유대체연료를 원료의 특성에 따라 바이오연료, 재생합성연료, 그 밖의 석유대체연료로 구분하여 명시하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기술개발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지원사업 대상에 추가하며, 석유대체연료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한국석유관리원 등으로 정하고, 석유정제업자는 친환경정제원료의 종류 및 투입량 등 친환경정제원료 사용내역을 보고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원유 수입지역을 다변화함으로써 원유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미주(美洲), 유럽이나 아프리카 등 중동지역 외의 지역에서 원유를 수입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에 대한 부과금의 환급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 (제2조제8호, 제5조, 제27조제3항, 제33조제6호 신설, 제40조제1항제1호 등)

산업통상자원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24-08-07 시행

석유정제원료로 석유 외의 친환경정제원료의 사용을 허가하고, 석유정제업자는 친환경정제원료의 종류 및 투입량 등 친환경정제원료 사용내역을 보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법률 제20201호, 2024. 2. 6. 공포, 8. 7.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807호, 2024. 8. 6. 공포, 8. 7. 시행)이 개정됨

이에 따라, 친환경정제원료를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물질로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 및 바이오에너지의 원료물질로 활용할 수 있는 생물자원 등으로 정하고, 석유정제업자가 친환경정제원료를 최초로 투입하거나 투입하는 친환경정제원료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30일 이내 한국석유관리원에 보고하도록 보고 방법 및 기한을 규정하는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석유판매업자의 이동판매 대상에 소방차를 추가하고, 석유대체연료 대리점, 주유소, 판매소에서 판매할 수 있는 석유대체연료의 종류를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제2조의2제1항제1호, 제2조의3 신설, 제3조의3 삭제, 제37조제4항, 제43조의2 등)

국토교통부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

2024-08-14 시행 예정

국토의 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와 대구광역시를 연결하는 달빛철도의 신속한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0293호, 2024. 2. 13. 공포, 8. 14. 시행)됨

이에 따라, 달빛철도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 및 달빛철도 건설사업 실시계획에 추가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정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달빛철도 건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를 정하며, 지역기업을 우대하는 공사·물품·용역 등 계약의 종류와 우대기준을 마련하는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달빛철도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의 내용 (제2조)

-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달빛철도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에는 달빛철도의 건설 예정 노선을 표시한 지형도,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 수송에 관한 사항 및 건설 예정 노선에 투입되는 철도차량의 종류, 필요량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

② 달빛철도 건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절차 (제3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달빛철도 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지정신청서에 사업계획서, 자금조달계획서 및 달빛철도의 건설 예정 노선을 표시한 지형도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③ 달빛철도 건설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제4조)

- 달빛철도 건설사업의 시행자가 작성하는 달빛철도 건설사업 실시계획에는 사업 시행지역의 위치도,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사항 및 계획평면도·단면도 등 설계도서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

④ 지역기업 우대에 관한 계약 (제5조)

- 달빛철도 건설사업의 시행자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우대할 수 있는 공사의 종류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 및 전문공사, 「전기공사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등으로, 우대할 수 있는 물품의 종류를 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기자재·기계류·사무기기 및 전산장비 등으로, 우대할 수 있는 용역의 종류를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 및 공사감리 등으로 정함
- 지역기업 우대기준은 달빛철도 건설사업의 시행자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정하도록 하고, 그 내용을 사업시행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관할 광역시 및 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함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5-06-14 시행 예정
(다만, 제6조 등 일부 개정규정은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

인체의 피부에 무늬 등을 새기기 위한 피부 착색 물질인 문신용 염료를 위생용품의 종류에 추가하고, 영업자가 위생용품의 신고·보고 사항 및 기준·규격 등에 대한 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그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위생증명서 등을 발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위생용품 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9474호, 2023. 6. 13. 공포, 2025. 6. 14. 시행 및 법률 제2047호, 2024. 2. 6. 공포, 8. 7. 시행)됨

이에 따라, 문신용 염료의 범위를 미용 또는 예술 표현을 목적으로 영구적 또는 반영구적으로 피부를 착색하기 위해 바늘 등을 사용하여 피부 속에 주입하는 것으로 정하고, 문신용 염료를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품목에 추가하여 위생용품제조업자가 문신용 염료를 제조·가공하려는 경우 그 제품명, 성분 등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며, 위생증명서 등의 발급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제2조, 제3조제2호의2 신설, 제6조, 제13조제8호 등)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24-08-07 시행

의료기기 제조신고·수입신고의 수리 절차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임상시험 대상자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적은 임상시험의 경우에도 임상시험계획 승인 제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며, 임상시험의 특성에 따라 임상시험기관이 아닌 기관에서도 임상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의료기기법」이 개정(법률 제20220호, 2024. 2. 6. 공포, 8. 7. 시행)됨

이에 따라, 의료기기 제조신고 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는 경우 제조신고증 또는 수입신고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임상시험계획 승인 면제 대상에 의료기기 기준규격에서 정한 임상시험 방법에 따라 실시하는 임상시험 등을 추가하며, 임상시험기관이 아닌 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는 임상시험의 범위를 건축물 또는 시설물에 고정식으로 설치되어 이동이 불가능한 의료기기를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 등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시각·청각장애인의 원활한 의료기기 사용을 위하여 의료기기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에게 의료기기 기재사항 일부를 점자 등을 사용하여 병행 표시하는 등의 행위를 권장할 수 있는 대상을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자가 사용용 의료기기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제4조제2항제1호다목, 제7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20조제2항제2호, 제21조의2 신설 등)

금융위원회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4-08-07 시행

보험사기행위의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관계 기관 등에 대한 자료 제공 요청 권한을 부여하고, 입원적정성에 대한 체계적인 심사를 위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그 심사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며, 보험회사가 자동차보험사기로 보험료가 부당하게 할증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기 피해사실 등을 고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0303호, 2024. 2. 13. 공포, 8. 14. 시행)됨

이에 따라, 보험사기행위 조사에 필요한 자료 요청 대상 기관·단체 및 자료의 범위, 입원적정성 심사 기준을 마련할 때 고려할 사항, 자동차보험사기 피해사실의 고지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자료 요청 대상 기관·단체 및 자료의 범위 (제3조의2 신설)

- 금융위원회는 보험사기행위의 조사를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의 기관·단체에 요양급여의 지급, 장애연금의 환수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② 입원적정성 심사 기준 마련 시 고려사항 등 (제3조의3 신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입원적정성에 대한 심사 기준을 마련할 때 병력·건강상태 등 환자 개인의 특성과 입원치료의 유효성, 필요성 및 의학적 타당성을 고려하도록 하고, 심사 기준을 마련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함

③ 자동차보험사기 피해사실의 고지사항 (제3조의4 신설)

- 보험회사는 자동차 사고와 관련된 보험사기행위로 보험료가 부당하게 할증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자동차보험의 보험료가 부당하게 할증된 사실,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내용과 그 환급절차 등의 사항을 고지하도록 함

2. 입법(행정) 예고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예고 법령안	의견접수기간
해양수산부	농어업경영체법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4.08.08. ~09.19.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어업경영체 신청 및 확인서 발급을 어업인들이 가까운 지자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일부 위임한 어업경영체 관련 사무 처리 방법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어업경영체 등록(변경) 신청 접수 및 등록확인서 발급 기관에 지방해양수산청장 외 지자체장*을 추가 (안 제22조제1항제1호)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문의처 :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mailto:해양수산부_소득복지과) (전화: 044-200-5465, 팩스: 044-200-5479)

해양수산부	농어업경영체법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4.08.08. ~09.19.
-------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어업경영체 신청 및 확인서 발급을 어업인들이 가까운 지자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일부 위임한 어업경영체 관련 사무 처리 방법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어업경영체 등록 신청서 제출 기관에 ‘지자체장*’을 추가 (안 제3조의2제1항)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② ‘지자체장’은 어업경영체 등록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 어업경영체 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을 통해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이송 (안 제3조의2제2항 신설)
- ③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발급 기관에 ‘지자체장’을 추가 (안 제3조의2제4항)
- ④ 어업경영체 등록 정보의 변경·보완 신청 기관에 ‘지자체장’을 추가 (안 제4조의2제1항, 제2항)
- ⑤ ‘지자체장’은 어업경영체 변경등록 신청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시스템’을 통해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이송 (안 제4조의2제3항)
- ⑥ 어업경영체 변경등록 확인서 발급 기관에 ‘지자체장’을 추가(안 제4조의2제4항, 제5항, 제6항)

※ 문의처 :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mailto:해양수산부_소득복지과) (전화: 044-200-5465, 팩스: 044-200-5479)

소비자에게 영양에 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기 위하여 영양표시를 하여야 하는 대상을 EU, 미국, 캐나다, 일본, 중국 등 주요 국가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확대하고, 카페인을 일정량 이상 함유한 액체 식품등에 대해 고카페인 함유 등 표시를 하도록 하던 것을 과라나를 원재료로 사용하여 일정량 이상의 카페인을 함유한 고체 식품까지 확대하여 소비자가 고카페인 식품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주의사항 표시를 강화하는 한편,

냉동식품에는 ‘이미 냉동되었으니 해동 후 다시 냉동하지 마십시오.’라는 주의사항을 의무적으로 표시하여야 하나, 얼음, 또는 아이스크림 등 바로 섭취하는 식품으로서 해동이 불필요한 냉동식품에는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영양표시 대상 확대 (안 별표 4)

- 영양표시 대상에 77개 품목 추가·확대 (총 259개, 전 품목의 90%)
- 단, 제외국과 같이 영양정보 제공 필요성 낮은 경우 제외 (미국, EU, 일본 등도 영양정보 제공 필요성 낮은 경우 영양표시 제외)
- 업체규모 따라 시행일 구분 (매출액 120억원초과: '26년, 120억원이하: '28년)

② 과라나 함유 고체식품의 고카페인 주의사항 표시 신설 (안 별표 2)

- 과라나를 원재료로 사용한 1g 당 0.15mg 이상의 카페인을 함유한 고체 식품으로 고카페인 의무표시 확대

③ 당알코올 함유 제품의 주의사항 표시개선 (안 별표 2)

- 당알코올류 과량 섭취 주의사항 표시위치, 표시방법, 표시대상 식품 등을 명확히 규정

④ 냉동식품의 소비자 안전 주의사항 표시개선 (안 별표 2)

- 빙과, 얼음류 및 아이스크림류에 표시의무 제외토록 단서 신설

※ 문의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표시광고정책과](#) (전화: 043-719-2183, 팩스: 043-719-2180)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7인)

2024-08-05 발의

현행법에서는 이사의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는 규정하고 있으나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이사가 회사에는 영향이 없지만 주주간의 이해충돌로 인해 주주간에 부(富)의 이전이 일어나는 의사결정을 한 경우 이는 주주간의 문제일뿐 이사는 주주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례로 인해 손해를 입은 주주들이 손해회복을 위한 구제수단이 없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또한 최근 밸류업 프로그램이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으나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없이 밸류업 프로그램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이사에게 주주를 공정하게 대할 의무를 부여하고, 주주총회에서 소수주주만으로 결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면책을 줌으로써 소수주주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안 제382조의3, 안 제401조 및 안 제401조의2)

정무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의원 등 12인)

2024-08-05 발의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 매도하고 추후 매수하여 상환하는 신용매도로, 모든 선진 증시에서 널리 허용되는 거래기법임. 그러나, 주식을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결제 불이행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투기 등에 악용될 우려가 있어 불법으로 엄격히 금지됨

우리나라는 해외 증시와 달리 변동성이 크고 개인투자자의 비중이 높아 공매도의 부작용이 더욱 우려되는 측면이 있으며, 최근 글로벌 IB의 관행화된 무차입 공매도가 적발됨에 따라 공매도가 증권시장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2025년 3월 30일까지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음

이에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 제한, 불법 공매도에 대한 형사처벌·제재 강화 등 근본적인 공매도 제도개선을 통해 공매도의 불법·불공정 문제를 해소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차입공매도 거래자의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 취득 제한 (안 제180조의4)

-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이 공시된 이후 발행 전 마지막 전환가액 또는 신주인수권행사가액 공시 전까지 차입공매도를 한 경우, 해당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취득을 제한하여 공매도를 통해 전환가액 또는 신주인수권행사가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차익을 얻는 행위를 제한함

② 공매도 목적 대차계약의 상환기간 제한 (안 제180조의5)

- 차입공매도를 목적으로 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통령령에 따른 상환기간 제한을 적용받도록 하고, 대차 중개기관이 대차계약의 목적에 따라 상환기간을 구분 관리하도록 함

③ 공매도 내부통제기준 및 전산시스템 등 무차입 공매도 방지조치 의무 (안 제180조의6 신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증권에 대하여 차입공매도를 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 마련, 전산시스템 구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투자중개업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투자자의 무차입 공매도 방지 조치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한 이후 공매도 주문을 수탁하도록 함

④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 확대 (안 제407조)

- 금융투자상품 거래제한대상자가 제한명령에 위반하여 금융투자상품을 취득하고, 이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내리는 금융투자상품의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를 마련함

⑤ 지급정지 요구 신설 (안 제426조의2 신설)

- 불법적 이익의 은닉을 방지하고 효과적인 벌금 및 과징금의 징수를 위하여 시세조종,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사기적 부정거래,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하였거나 무차입 공매도를 하였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금융거래를 정지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증권선물위원회가 계좌 자산의 처분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함

⑥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명령 신설 (안 제426조의3 신설)

- 시세조종,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사기적 부정거래,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한 자 또는 무차입 공매도를 한 자에 대하여 증권선물위원회가 최대 10년간 자기 계산으로 행하는 금융투자상품의 거래, 주권상장법인 등의 임원 선임·재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⑦ 무차입 공매도 방지조치 위반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 및 외국금융투자감독기관과의 정보교환 규정 적용 (안 제427조 및 제437조)

- 공매도 내부통제기준, 전산시스템 구축 등 무차입 공매도 방지조치 의무 위반에 대하여 무차입 공매도, 불공정거래 등과 동일한 조사 및 외국금융투자감독기관과의 정보교환 규정을 적용함

⑧ 무차입 공매도 등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안 제443조)

- 시세조종,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사기적 부정거래 또는 무차입 공매도를 한 자에 대한 벌금형을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서 4배 이상 6배 이하로 상향하고, 무차입 공매도를 한 자에 대해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규모에 따라 불공정거래와 동일하게 징역형을 가중하도록 함

⑨ 지급정지 조치 누설시 형사처벌 신설 (안 제446조)

- 지급정지 조치가 완료되기 전에 명의인 등 제3자에게 누설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⑩ 대차 상환기간 위반, 무차입 공매도 방지조치 위반, 지급정지 조치 및 제한명령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신설 (안 제449조)

- 안 제180조의5에 따른 차입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 위반 및 대차 중개기관의 구분 관리 위반, 안 제180조의6에 따른 무차입 공매도 방지조치 위반, 안 제426조의2에 따른 지급정지 요구 위반, 안 제426조의3에 따른 제한명령 등 위반에 대하여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안 제426조의2에 따른 지급정지 조치 통지 위반 및 안 제426조의3에 따른 거래제한대상자의 요청 관련 처리결과 통보 위반에 대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정무위원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3인)

2024-08-06 발의

현행법은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건전한 금융생활 지원 및 금융소비자의 금융역량 향상 등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장기화로 비대면 금융거래가 가속화됨에 따라 노인, 장애인 등 금융생활에 취약한 사람들이 금융사기 등의 피해를 입거나 금융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금융소비자 중에서도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금융위원회가 금융취약계층의 보호 및 금융역량 향상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을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내부통제기준에 금융취약계층의 편리한 금융생활 지원과 금융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게 하여 금융취약계층의 권익 보호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안 제29조의2 신설 등)

정무위원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등 10인)

2024-08-07 발의

현행법은 금융상품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이하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라 함)가 건전하게 영영할 수 있도록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특히,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금융상품을 방문판매하거나 전화로 권유 판매를 하는 경우 임직원의 명부를 작성하게 하는 등의 의무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디지털 금융의 발전과 코로나19 등으로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었고, 이에 따라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금융소비자에게 화상통화로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이 활성화되고 있음. 예를 들어 보험상품의 경우 2023년도 하반기부터 화상통화를 활용한 보험 모집 및 가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은행의 경우 화상상담시스템을 구축하여 금융상품판매의 창구로 활용하려는 것으로 나타남

이와 관련하여 화상통화를 비롯한 비대면 금융상품 판매방식이 현행법에 따른 ‘전화권유판매’ 방식에 포섭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비대면 금융상품 판매방식에 대한 근거 규정을 도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참고로 「보험업법 시행령」은 “전화”와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인터넷 화상장치”를 구분하여 규율하고 있고, 「금융소비자보호법」개정 이후 마련된 업권별 모범규준 역시 법률보다 구분을 세분화하여 “전화권유판매”와 “화상권유판매”를 별도로 규율하고 있음

이에 따라 금융상품의 화상권유판매 방식과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이 금융상품의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방식과 동일하게 규제될 수 있도록 현행법에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금융소비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안 제16조의2 및 제21조의2 등)

정무위원회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2024-08-07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가상자산사업자를 포함한 금융회사등이 수행하는 업무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고 그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기관경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최근 가상자산사업자가 운영하는 거래소에 대하여 금융정보분석원이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거래소 이용자들이 거래소의 운영과정상 문제점을 파악하여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하고, 투명한 가상자산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검사결과에 따른 조치내용을 외부에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금융정보분석원장의 검사결과에 따른 조치의 주요 내용을 외부에 공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가상자산거래 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안 제15조제6항, 제15조제10항 신설)

정무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4인)

2024-08-06 발의

생체정보는 안면인식을 활용한 출입통제, 스마트폰 잠금해제, 금융권의 본인인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향후 그 이용이 일상화되고 보다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출입국관리법」 및 「항공보안법」에서는 본인 일치 여부 확인 등에 활용되는 사람의 지문·얼굴·홍채 및 손바닥 정맥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한 정보를 생체정보로 정의하고, “생체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처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에는 생체정보에 대한 용어를 사용하거나 개념을 정의하고 있지 않으며, 동법 시행령에서 민감정보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어, 생체정보 유출의 위험성, 생체정보의 활용도 등을 고려할 때 생체정보 관련 사항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생체정보의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민감정보의 유형으로 지문·얼굴·홍채 및 손바닥 정맥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한 정보를 추가하여 생체정보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안 제23조제1항)

정무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수민의원 등 10인)

2024-08-06 발의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글로벌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이에 따른 내수경기 회복이 더뎚지면서 지난 5월 우리나라의 생산, 소비, 투자가 지난달보다 줄어드는 ‘트리플 감소’를 기록함. 이러한 투자위축은 기업의 혁신을 위축시켜 장기적 성장동력 잠식까지 초래하고 있음. 우리나라 경제가 마주하고 있는 장기적 저성장 구도를 탈피를 위해서는 기업들의 투자 진작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점임

이를 위해서는 경제전반의 불확실성 제거, 금리인하 등의 거시경제적 여건 개선과 더불어 기업들이 현장에서 직면하는 각종 제도적 어려움을 해소해 줄 필요가 있음

지난 2021년 12월 일반지주회사도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orporate venture capital, 이하 ‘CVC’)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정거래법이 개정·시행되면서 지주사의 잉여금을 활용한 국내 벤처·스타트업 투자 활성화의 길이 열림. 그러나 시장의 훈풍(薰風)을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일부 행위규제가 펀드조성과 투자단계에서 투자 의욕을 꺾는 사례가 다수 발생되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대두되고 있음

또한 금융투자의 주체인 투자회사, 설비투자의 주체인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사업시행자 등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기업결합 신고가 면제되고 있음에도, 해당 회사들에 대한 영향력이 주식 취득보다도 약하고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낮은 임원겸임은 신고 면제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투자회사 및 민간투자사업시행자 등을 통해 투자활동을 하려는 사업자들이 불필요한 신고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현실 또한 개선이 필요한 부분임

이에 CVC가 투자조합을 결정하는 경우 지주회사 체제 외부자금 유치 한도를 현행 40%에서 최대 50%까지로 늘리고 총자산 중 해외투자 금액 비중을 현행 20%에서 30%까지 상향하는 한편, SOC 등 투자회사 등의 임원을 겸임하는 기업결합은 신고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들의 활발한 벤처펀드 결성을 촉진하고 위축된 벤처투자를 활성화함은 물론, 나아가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통한 국가 경제 성장동력의 확충에 기여하고자 함 (안 제11조 및 제20조)

정무위원회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1인)

2024-08-06 발의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온라인 전자상거래의 급증으로 온라인 플랫폼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빠르게 확대됨. 소비자 및 소상공인의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거래 의존도가 갈수록 심화됨

디지털 경제 혁신을 이끌어가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가 강화하고 있는 반면,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늘고 있음

온라인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가 10년전보다 7.7배인 230조원에 달하고 있음. 그러나 아직도 판매대금 정산주기가 법적으로 명시되지 않고 있는 것을 비롯해 입점 판매자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함

최근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입점 판매자)들의 판매대금 정산 지연에 이은 기업회생신청으로 물의를 빚은 티메프 사태는 더 이상 입점 판매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음

온라인 전자상거래의 경우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고 있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계약서 마련, 상생협약과 같은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또한 온라인 플랫폼에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고 있음

이로 인해 날로 몸집을 불려가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에 의한 갑질과 불공정 거래를 통제할 수 있는 법적 수단과 장치가 허술한 상태임

현행 「대규모유통업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납품업자에 대한 판매대금 지급기한을 명시하고 있으나 온라인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판매대금 지급기한은 법적으로 마련되지 않고 있음

미정산액이 1조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는 티메프사태는 6만명에 이르는 입점 판매자들의 연쇄 도산을 부추기고 있음. 뿐만 아니라 5,600억원에 이르는 정부의 긴급자금 투입에 이르기까지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을 안기고 있는 실정임

특히 독과점을 통한 시장지배력 확대에만 몰두하는 온라인 플랫폼간 출혈경쟁이 이번 티메프 사태의 주된 원인으로 거론됨

이에 따라 **판매대금 지급기한 설정 등 온라인 전자상거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티메프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함**

이에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관계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와 절차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사업자와 플랫폼 이용자(입점 판매자)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원활한 분쟁 해결을 위한 법적 조치를 담은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거래질서를 확립하려 함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이 법의 적용대상 및 주요개념인 온라인 플랫폼,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수수료, 광고비의 용어를 정의함 (안 제2조)
- ② 이 법의 적용범위는 플랫폼 사업자 중 매출액(직전 사업연도에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및 부가서비스 제공을 통한 수수료 수입이 1백억원 이상인 사업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또는 중개거래 금액(직전 사업연도에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를 통해 판매가 이루어진 상품·용역 판매가액 합계액이 1천억원 이상인 사업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이 일정규모 이상인 사업자로 함 (안 제3조)

- ③ 이 법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거래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가 하는 증권거래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 하는 금융상품거래 등에는 적용하지 않음 (안 제4조)
- ④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거래조건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사전적인 분쟁예방이 가능하도록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에게 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를 부여하고, 주요 항목은 계약서에 의무적으로 명시(필수 기재사항)하도록 하였으며,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해당 약관과 동의 사실을 언제든지 열람·저장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 경우 계약서 서면 제공의무 등을 이행한 것으로 보도록 함 (안 제7조 및 제9조)
- ⑤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는 검색·배열순위를 결정하는 기본원칙을 온라인 플랫폼에 공개하여야 함 (안 제8조)
- ⑥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와 체결한 중개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서비스를 제한·중지·해지하는 경우 사전통지 하도록 함 (안 제10조 및 제11조)
- ⑦ 기존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금지 조항을 플랫폼 산업의 특성에 맞게 구체화하여 부당한 이용사업자 차별행위, 특정 결제방식 강제행위,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제공 제한·중단·거절행위, 그리고 소비자가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정산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 등을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함 (안 제12조)
- ⑧ 그 외 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 행위, 배타적 거래 강요 행위, 경영정보의 제공 요구 행위 등을 별도로 금지행위로 정함 (안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 ⑨ 건전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및 이를 구성원으로 하는 사업자단체 간 불공정한 내용의 중개계약이 체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표준온라인플랫폼중개거래계약서를 마련하도록 규정함 (안 제18조)
- ⑩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간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관련 법령의 준수 및 상호 지원·협력을 약속하는 협약에 대한 근거조항을 마련함 (안 제19조)
- ⑪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 또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사업자단체가 주도하여 자율적으로 규약을 정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함 (안 제20조)
- ⑫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간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실효성 있고 신속한 분쟁해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함 (안 제21조부터 제29조까지)
- ⑬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위반사실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이 법의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 (안 제30조 및 제31조)
- ⑭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사이의 거래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조사결과를 공표할 수 있음 (안 제32조)
- ⑮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 등에 대하여 시정명령,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음 (안 제34조, 제35조, 제37조 및 제38조 등)
- ⑯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자발적 시정방안을 통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동의를결제도를 도입함 (안 제36조)

- ⑪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가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의 법 위반행위 또는 그 우려에 따른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금지청구제도를 도입함 (안 제39조)

정무위원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송언석의원 등 11인)

2024-08-07 발의

최근 발생한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통신판매중개자의 자의적인 대금 정산 주기와 부적절한 판매 대금 관리가 지목되고 있음

현행법상 대규모유통업자의 정산 주기에 대해서는「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정하고 있지만 통신판매중개자의 정산 주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며, 판매 대금을 보호할 수 있는 규정도 미비함

이에 개정안은 통신판매중개자의 정산 주기를 구매를 확정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로 하고, 정산이 지연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이율을 가산해 지급하도록 함 (안 제20조의4 신설)

또한 판매 대금을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를 통하여 별도 관리하도록 하여 통신판매중개자가 판매 대금을 임의대로 유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0조의5 신설 등)

정무위원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박정현의원 등 13인)

2024-08-07 발의

최근 벌어진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의 경우 통신판매중개업체가 현행법의 미비점을 악용해 대금지급 기간까지 유예된 정산대금을 유용한 것이라는 의혹을 사고 있음. 대기업 유통사는 결제대금을 40일 내지 60일 사이에 결제하도록 법으로 규정(대규모유통업법 제8조 등)하는데 반해 전자상거래법에서는 이런 규정이 미비한 상황이 문제가 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기존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재화·용역 등을 판매하는 중소기업들의 경우 상품의 판매가 완료되었음에도 통신판매중개업체의 입고 처리 지연으로 인해 최장 2달 이상 상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빈번함. 쿠팡·위메프·티몬 등 통신판매중개업체의 대금지급 기간을 보면 짧게는 1일에서 길게는 60일 이상까지 소요되는 등 업체마다 편의적으로 정산기간을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이에 정산대금을 별도 관리하도록 하여 이커머스 중개업체가 정산대금을 임의대로 유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이를 위반할 시 영업정지등의 제재를 받도록 개정하고자 함 (안 제8조의2 신설 등)

또한 통신판매중개업체(이커머스)의 대금지급 의무기한을 규정하고자 함 (안 제20조제4항·제5항 신설)

정무위원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4인)

2024-08-08 발의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온라인시장 규모는 역대최고치인 227조원을 넘어섰고 이는 2018년 114조원에서 5년 만에 2배 가까이 급속도로 성장한 것임

온라인상품시장의 매출이 급신장세를 기록하는 반면,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재화·용역 등을 판매하는 중소기업자는 상품의 판매가 완료되었음에도 통신판매중개업체의 입고 처리 지연으로 인해 제때 상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자금 유동성에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임. 참고로 쿠팡·위메프·티몬 등 통신판매중개업체의 대금지급 기간을 보면 짧게는 1일에서 길게는 60일 이상까지 소요되는 등 업체마다 편의적으로 정산기간을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특히 이번 티몬·위메프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 역시 긴 정산주기가 도화선이 됐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사이버몰을 이용하는 통신판매중개거래에서 상품대금의 지급기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규모사이버몰의 운영사업자 등 통신판매중개업자에 대한 대금지급 의무기한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금지급 지연으로 인한 사이버몰을 이용하는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려는 것임 (안 제20조의4 신설 및 제32조)

정무위원회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35인)

2024-08-09 발의

금융감독원은 티몬, 위메프가 장기간 적자로 자본 잠식상태이어서 전자금융거래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2022년 6월과 2023년 12월 2차례에 걸쳐 경영개선계획 협약을 체결하면서 판매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판매대금 미정산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탁을 해 놓도록 하였으나, 티몬과 위메프가 이러한 경영개선계획을 불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하였음. 이러한 금융감독원의 감독 해태 과정에서 티몬과 위메프의 자금이 다른 해외 기업 인수자금으로 사용되는 등 방만하게 자금이 운용되기도 하고 급기야 2024년 7월 티몬과 위메프가 대규모 판매대금을 정산하지 못하는 대규모 금융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음

한편, 금융감독원은 티몬과 위메프가 경영개선협약과 달리 판매대금 미정산 금액을 별도 신탁하지 않고 있고 자금 운용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융감독원이 대상 전자금융업자에 대해 경영지도 기준을 정하고 경영개선협약을 체결하는 것 외에 다른 법적 근거가 없어 실효성 있는 제재나 감독을 할 수 없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음

전자금융거래법 제42조는 금융감독원이 허가 전자금융업자에 대해서는 경영지도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자본증액과 이익배당 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고(제3항), 경영지도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금융사고가 발생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임원개선명령이나 영업정지·취소의 행정처분(제4항)을 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나, 등록 전자금융업자에 대해서는 경영지도기준이나 경영개선협약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제제나 영업정지 등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는 상태임

이에 등록 전자금융업자 중에서도 그 매출 규모나 이용 횟수가 많아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소비자나 판매자의 피해가 큰 직전 3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연평균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인 등록 전자금융업자에 대해서는, 허가받아 영업하는 전자금융업자와 마찬가지로 경영지도기준을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본증액과 이익배당 제한 명령, 임원개선명령이나 영업정지·취소의 행정처분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티몬·위메프 사태와 같은 대규모의 소비자·판매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안 제42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기획재정위원회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0인)

2024-08-08 발의

현행법은 법인세율의 과세표준 구간을 4단계로 구분하고, 3천억원 초과 구간에 대하여 24%의 최고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OECD 회원국 평균 법인세 최고세율인 21.5%보다 높은 수준으로,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과세표준 구간을 현행 4단계에서 3단계로 단순화하고, 법인세 최고세율을 24%에서 22%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 (안 제55조제1항)

기획재정위원회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의원 등 11인)

2024-08-05 발의

현행법은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에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연초의 잎뿐만 아니라 줄기, 뿌리 등을 이용하거나 합성니코틴 등으로 만든 담배의 판매 및 유통이 증가하고 있음. 또한 니코틴을 이용하여 만든 전자담배의 경우 현행 기준상 개별소비세의 부과대상에 속하지 않으며 경고그림·문구 표기 등의 관리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있음

이에 담배의 정의를 수정하여 연초의 잎뿐만 아니라 줄기, 뿌리 등을 이용하거나 니코틴으로 만든 것도 담배의 범위에 포함하여 규제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2조제1호 등)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4인)

2024-08-05 발의

현행법은 영유아용 기저귀 및 분유 등 일정한 재화 및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젖병, 젖꼭지, 이유식 및 유축기 등 육아용품은 부가가치세 면제에 포함되는 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함

그러나 해당 육아용품은 자녀 양육에 필수적인 재화이므로, 양육자의 자녀 양육 부담을 낮추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젖병, 젖꼭지, 이유식 및 유축기 등 육아용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려는 것임 (안 제106조제1항)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의원 등 13인)

2024-08-07 발의

현행법은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두어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지급하는 월세액의 100분의 15(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17)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되, 월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월세액이 상승하는 경향으로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으므로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제적용이 되는 월세액 한도를 현행 1천만원에서 1천200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안 제95조의2)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의원 등 14인)

2024-08-07 발의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골목 상권 및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있음

그러나 지역사랑상품권을 보다 활성화하고 지역 주민의 이용 편의성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수단으로 결제 가능한 가맹점이 더욱 많아져야 하는데, 가맹점 등록을 위한 유인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당 가맹점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려는 것임 (안 제8조의5 신설)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0인)

2024-08-08 발의

현행법에서는 내국인이 연구·인력개발비나 자산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기업규모나 신성장·원천기술 여부, 국가전략기술 여부 등에 따라 비율을 달리하여 세액공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세액공제 요건에 수도권 및 비수도권 소재 기업에 대한 차이를 반영하여 비수도권 지역에 소재한 기업에 대한 별도의 세제지원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기업 육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한 기업이 연구·인력개발비 및 자산 투자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10조제1항제4호 및 제24조제1항제2호다목 신설)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의원 등 12인)

2024-08-06 발의

현행법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사업금액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제한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에 참여를 제한하는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제도는 공공소프트웨어 시장에서 중소기업의 성장과 주사업자 다변화 등 국내 소프트웨어산업 기반 확대에 기여한 측면도 있으나, 기업규모에 따른 과도한 차별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됨

한편, 소프트웨어사업의 품질을 제고하고 공공소프트웨어 시장을 선진화하기 위해서는 설계·기획 단계에서부터 해당 사업의 내용·구조 등이 명확히 도출되도록 하고 클라우드 전환 촉진, 인공지능 등 민간의 신기술 도입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설계·기획 단계 사업을 전면 개방하여 역량있는 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대형 공공소프트웨어 사업은 오류 발생 시 국가·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심각한 국민 불편·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최적의 사업자가 선정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과 별도로 발주하는 설계·기획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를 참여시킬 수 있도록 예외를 신설하는 한편, 대형 공공소프트웨어 사업에 대해서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참여를 허용함으로써 소프트웨어사업자간 경쟁 활성화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전체 공공소프트웨어 사업의 품질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소프트웨어 개발,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과 별도로 발주하는 설계·기획 단계 사업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인 경우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허용함 (안 제48조제3항제6호 신설)
- ②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참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사업의 범위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와 같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안 제48조제4항 삭제)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의원 등 17인)

2024-08-08 발의

현행법은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 및 유해매체물의 광고금지를 규정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는 등 청소년 보호를 위한 조치들을 열거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외국 주요 입법례를 보면, 사회관계망서비스제공자가 미성년자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중독성 있는 콘텐츠들이 무분별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관리책임을 부여하는 등 구체적 사안에 대하여도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노력을 발견할 수 있음

이에 법률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와 알고리즘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원칙적으로는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는 사회관계망서비스 안에서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용자에게 정보를 추천하는 알고리즘을 허용하지 않도록 하되, 친권자 등 보호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함

이 경우에도 자정부터 오전 6시 이전 사이의 시간대에 대하여는 정보추천 알고리즘을 허용함에 있어서 보호자의 추가적인 동의가 필요하도록 하여 사회관계망서비스 안에서 청소년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안 제2조제1항제14호 및 제15호, 제42조의4 신설 등)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
김우영의원 등 25인)

2024-08-08 발의

인터넷서비스가 동영상(OTT 등)을 중심으로 발전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 트래픽이 급증하고 있음. 이에 따라 소수의 글로벌 부가통신사업자(CP)가 인터넷 트래픽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우리나라 역시 글로벌 부가통신사업자(CP)가 트래픽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국내 기간통신사업자(ISP)와의 자율적 협의에 의한 망 이용대가를 거부하고 있어 국내외 부가통신사업자(CP)간 역차별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디지털콘텐츠 제공 시 정보통신망 이용·제공에 관하여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을 부과하거나 계약 체결을 부당하게 지연·거부하는 등의 행위를 제재해 국내외 부가통신사업자(CP)간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고자 함

또한 정보통신망 이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의 근거를 마련해 망 사용 추이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망 이용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안 제34조의3 신설 등)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4인)

2024-08-08 발의

전기통신사업자는 수사기관 등이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등을 위하여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기본권 침해 논란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 등은 아무런 견제 장치 없이 무분별하게 통신자료를 제공 받을 수 있어 이에 대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음

실제로 2022년 483만 9천여건까지 줄어들었던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조회 건수가 2023년 514만 8천여건으로 30만 9천여건 급증하고, 검찰에 의해 국회의원·보좌진·언론인·언론학자들에 대한 무분별한 통신자료 수집이 이뤄지면서 ‘묻지마 사찰’이 이뤄진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수사기관들의 권한남용 방지와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에 대해서도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과 같이 법원의 ‘영장주의’를 도입하고,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사실 통지 유예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뤄질 수 있도록 하며, 유예기간도 현행 6개월에서 3개월로 한정하려는 것임 (안 제83조 및 제83조의2)

행정안전위원회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1인)

2024-08-06 발의

소방 전문가에 따르면, 금속화재는 불이 크게 번지면 마땅히 불을 끄는 방법이 없어 초기 진화가 중요하다고 함. 그러나 현행법상 금속화재는 화재 유형으로 분류되지 않아 전용 소화기 개발조차 어려운 실정임

이에 배터리 등을 이용하는 장비와 배터리 제조 및 보관 시설에는 전용 소화기 및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며, 소방청장이 화재 안전기준을 설정하도록 하여 금속화재에 대한 소화기 등 소방시설 개발 및 보급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11조의2 신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문석의원 등 13인)

2024-08-06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포털 사이트 사업자)는 언론이 생산한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할 수 있으며, 2023년 기준 포털 사이트를 통한 뉴스 이용률은 약 70%에 이르고 있는 등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음

현재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네이버와 다음과 같은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경우 각 회사 고유의 알고리즘에 의해 개인에게 추천하는 방식으로 기사 배열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최근 특정 성향의 언론 기사가 과도하게 노출되는 등 기사 노출 방식의 편향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바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하여금 고의적으로 기사배열을 조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기사배열의 기본방침과 기사를 배열하는 구체적인 기준 등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언론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안 제10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의원 등 11인)

2024-08-06 발의

문화상품완성보증제도는 문화상품의 제작자가 제작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에 보증서를 발급하고 문화상품을 완성하여 인도시 수령하는 판매대금이나 관련 수익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제도로 콘텐츠 제작 활성화를 통한 콘텐츠 산업 성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상 문화상품완성보증의 대상 및 범위가 선판매계약이 체결된 콘텐츠의 제작 단계에 한정되어 있어 영세한 기업의 경우 우수한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어도 판매계약에 이르지 못하여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문화상품완성보증의 적용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문화상품완성보증제도가 문화상품의 제작 단계뿐만 아니라 기획·개발 및 국내외 유통의 전 단계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확대·개편함으로써 문화콘텐츠산업의 성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2조, 제10조 및 제10조의2)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등 16인)

2024-08-06 발의

현행법은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기기, 장치 또는 게임물(이하 “불법프로그램 등”이라 함)을 배포, 제작, 유통하는 등 게임 산업 발전과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자를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불법프로그램 등을 배포, 제작, 유통하는 등의 범죄행위뿐만 아니라 불법프로그램 등을 이용하는 이용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게임 산업이 많은 피해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고의로 불법프로그램 등을 이용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여 게임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안 제32조제1항제10호의2 및 제48조제2항 신설 등)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윤준병의원 등 10인)

2024-08-05 발의

한민족의 역사와 대표성을 담고 있고, 우리의 자랑이자 세계유일의 유전자원인 한우는 축산인들에게는 주요 소득원이자, 국민들에게는 단백질 공급원으로써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는 산업임

그러나 현재 한우산업은 FTA 등 시장개방 이후 자급률 저하와 가격경쟁력 약화, 사료값 상승 등에 따른 생산기반 약화 등 위기에 직면한 상태임

특히, 축산 분야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한우분야 자원 재순환 및 경축순환 활성화, 가축분뇨 에너지화 등 탄소 저감을 위한 축산구조로의 전환이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이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한우산업의 발전과 지속가능성을 도모해야 할 필요성이 높음

이에 탄소중립 실현 과정과 환경변화에 따른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전환을 도모하고, 한우농가에 대한 실질적 지원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기후위기를 예방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변화에 따른 축산환경의 전환, 한우산업의 육성과 지원 및 한우가격의 안정적 유지를 도모하여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 축산업 경영의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안 제1조)

- ② 국가는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실현 과정에 따른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지원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환경과 여건에 맞는 한우의 생산 및 사육을 위하여 한우농가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안 제3조)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제환경과 국내여건 변화에 부합하는 한우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한우산업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안 제5조제1항)
- ④ 시·도지사는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안 제5조제7항)
-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한우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할 수 있도록 함 (안 제6조)
- ⑥ 한우산업발전을 위한 중장기적 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한우산업발전협의회를 둠 (안 제9조)
-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농가가 한우수급정책에 따른 수급조절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사육한 한우를 도축 및 출하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1조)
- ⑧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물 가격의 급락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소득금액 및 부채 기준 등 요건을 충족하는 한우농가에 대하여 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3조)
- 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규모 한우농가에 대하여 경영·기술·재무·회계 등에 관한 종합적인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5조)
- 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우의 판매확대 및 소비촉진을 위하여 공공급식의 확대, 시장개척 및 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7조)
- ⑪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의 품질개선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한우의 거래 규격 및 품질표시의 보급, 한우유통구조의 개선 등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 (안 제18조)
- ⑫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우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도축장의 현대화 및 권역별 도축·가공시설의 구축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9조)
- 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의 수출기반 조성을 위하여 해외개척, 수출검역 및 판매전략 등에 대한 정보제공 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 (안 제21조)
- 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농가의 탄소 저감을 촉진하기 위하여 경축순환 농업으로의 전환, 탄소감축 기술 개발 지원 등의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한우농가 역시 탄소 저감에 노력하여야 함을 명시함 (안 제22조)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한민수의원 등 11인)

2024-08-05 발의

최근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기술적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기술유출이 심각해지고 온라인을 통한 해외로의 기술탈취가 증가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국가핵심기술 또는 산업기술의 유출·침해행위 금지와 관련된 벌칙 규정을 두고 있으나 위반행위가 엄중함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음

2017~2021년까지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처리된 제1심 유죄 판결 중 유기징역(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은 6.2%에 불과한 반면, 무죄와 집행유예는 74.1%로 대부분 낮은 형량이 선고되고 있어 처벌수위를 높여 산업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산업기술유출범죄에 대한 역외규정 적용, 의회에 대한 보고의무, 목적범이 아닌 고의범 처벌규정 마련, 민사적 구제 강화 등을 법률에 규정하여 처벌의 법적 집행력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 ① 법원은 산업기술 침해행위의 금지 등을 청구하는 소가 제기된 경우 원고의 신청에 따라 임시로 산업기술 침해행위로 만들어진 물건의 압류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4조의2제4항 신설)
- ②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에 대한 규정은 해당 행위를 외국에서 한 경우에도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4조의4 신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산업기술의 유출 현황 및 시정 방안 등의 보고서를 매년 2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안 제17조의2 신설)
- ④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해당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의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20억원을 초과하면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함 (안 제36조제1항)
- ⑤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해당 행위를 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의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20억원을 초과하면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함 (안 제36조제2항)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8인)

2024-08-05 발의

현행법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해 공휴일 중에서 의무휴업일을 월 2회 지정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같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의무휴업일 지정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한 것은 각 지역 실정에 맞는 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으나,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평일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중소기업과의 갈등이 야기되고 공휴일에 근무해야 하는 대형마트 등의 근로자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의 의무휴업일을 평일이 아닌 공휴일 중에서만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무휴업 제도의 입법 취지를 살리고 대형마트 등의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안 제12조의2제3항)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3인)

2024-08-07 발의

현행법은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과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에너지 관련 사업을 하는 자로 하여금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투자할 것을 권고하거나,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공장 등에 대하여는 신·재생에너지 이용 설비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자국의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직접적인 지원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됨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국산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발전소와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등을 조성하는 자로 하여금 국내에서 생산되어 국내에서 유통되거나 판매되는 설비를 우선적으로 사용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되, 해당 설비를 사용한 자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계를 보호·육성하려는 것임 (안 제5조제2항제7호의2 및 제12조제4항 신설)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의원 등 10인)

2024-08-07 발의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기자동차의 보급이 급증하면서 이에 따른 화재 발생도 증가하고 있는데, 주로 충전시설로부터 전기를 충전 중이거나 주차 중에 발생하고 있음. 특히 전기자동차의 특성상 화재가 발생하면 열 폭주 등으로 진압이 매우 어려운 실정임. 또한 현실적으로 국토가 좁아 공공건물 및 공동주택 등의 주차구역이 대부분 지하에 있기 때문에 전기자동차 등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소방인력과 소방자동차 등의 진입이 어려워 대형 참사로 이어질 우려가 큼

그럼에도 현행법은 전기자동차 등의 충전시설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 등 안전관리 대책을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시설의 소유자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화재알림설비, 소화설비 등의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화재 예방뿐만 아니라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하여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11조의2제3항 신설, 제11조의4제1항·제2항 및 제11조의5제1항 등)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3인)

2024-08-07 발의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지자체의 장이 설치한 주차장 등에는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기자동차의 보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전기자동차로 인한 화재 발생도 급증하고 있는데, 전기자동차는 충전 중 화재발생 위험이 높고 화재가 발생하면 열 폭주와 폭발 등으로 화재진압이 매우 어려운 실정임. 특히, 건물의 지하주차장 등 옥내에서 전기자동차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차와 소방인력 등의 진입이 어려워 대형 참사로 이어질 우려가 매우 크지만 현행법은 화재 발생시 소방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의 옥내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방화셔터,

소화수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옥내 전기자동차 화재에 대한 예방과 안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안 제11조의2제13항 및 제16조제1항제2호 각각 신설)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4인)

2024-08-07 발의

현행법은 전기재해를 예방하고 전기설비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 등에 설치한 전기설비의 안전점검과 전기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기자동차의 보급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전기자동차로 인한 화재도 급증하고 있는데, 전기자동차 화재는 온도가 1천도까지 빠르게 치솟는 열폭주 현상과 폭발 등의 특징을 보이고 있어 현실적으로 화재진압이 매우 어려운 실정임. 특히, 건물의 지하주차장 등 옥내에서 전기자동차 화재가 발생할 경우 화재진압을 위한 소방차 및 소방인력의 진입이 어려워 대형 참사로 이어질 우려가 높아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공건물 등의 옥내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소화수조·방화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옥내에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하여 한국전기안전공사로 하여금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옥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과 소방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옥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화재를 예방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안 제16조의2 및 제52조제1항제1호의2 각각 신설)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언주의원 등 11인)

2024-08-08 발의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반도체·이차전지 등 4개 분야에서 국가·경제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첨단전략기술 및 산업을 지정하도록 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기본계획의 수립, 기술 보호조치, 특화단지 지정 및 운영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미국, 중국 등이 자국 반도체 기업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여 자국 내 반도체 생산을 촉진하는 등 글로벌 반도체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법만으로는 반도체 산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아울러, 현행법상 반도체 기술에 대한 보호조치는 규제적 성격이 강해

국내 기업의 투자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어 이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반도체 산업 전반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고, 대통령 소속 반도체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및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 반도체산업특별회계 설치 등을 규정함으로써 반도체 산업기반시설 구축에 관한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고 우리나라가 글로벌 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 및 지원함으로써 반도체 주권을 확립하고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안 제1조)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반도체산업이 국가와 국민경제에 미치는 중요성을 인식하여 반도체산업의 발전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안 제3조)
- ③ 정부는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안 제5조)
-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전년도 실행계획 이행실적 및 다음 연도의 실행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안 제6조)
- ⑤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과 관련된 정부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반도체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설치함 (안 제7조)
-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반도체산업의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반도체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반도체클러스터의 원활한 인프라 조성 등을 위하여 지원하여야 함 (안 제9조)
-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반도체클러스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전력 및 용수 공급 산업기반시설 등을 설치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안 제12조)
- ⑧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반도체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할 수 있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업이 반도체산업에 투자하는 경우에 대하여 자금의 일부를 융자할 수 있음 (안 제13조 및 제14조)
- 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급망안정품목을 선정하고, 반도체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고 반도체산업 공급망센터를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음 (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 ⑩ 정부는 반도체 기술혁신 및 지속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반도체산업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여야 함 (안 제19조)

환경노동위원회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2024-08-05 발의

현행법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순환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순환골재를 생산·판매하기 위하여는 위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순환골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인증을 할 수 있고,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을 제정하여 아스팔트콘크리트용, 콘크리트용, 도로공사용으로 3개의 순환골재 품질인증 용도를 규정하여 2007년부터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순환골재 품질인증의 품목 3개 중 2개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하 ‘KS인증’)과 중복되고, 그 기준도 거의 동일하여 2014년 규제개혁위원회의 범부처 인증제도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순환골재 품질인증을 KS인증과 통합하고자 하였으나 중단되었고, 2020년 12월 범부처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를 통하여 재추진이 결정되었으나 현재까지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임

특히, 순환골재 품질인증은 주로 생산된 순환골재가 품질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과 달리 KS인증은 품질기준 준수 여부 이외에도 품질경영, 자재관리, 공정관리, 소비자보호 조치현황 등도 심사하여 순환골재에 대한 품질관리 강화가 요구되는 최근의 추세를 고려하면 순환골재 품질인증과 KS인증의 통합이 필요함

이에 따라, 이 법에 규정된 순환골재 품질인증을 KS인증과 통합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안 제36조, 제36조의2, 제37조 및 제63조)

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6인)

2024-08-05 발의

현행법은 사업주의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형사처벌은 대부분 소액의 벌금형에 그치고, 체불사업주에 대한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지연이자 부과 등 여러 제재수단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경기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매년 약 1조 7천억 원의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약 27만여 명의 근로자가 피해를 입는 등 임금체불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

이에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재직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에 대하여도 지연이자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임금 채권의 시효를 5년으로 늘리는 한편, 고의·반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청산할 의지가 없는 ‘상습체불사업주’의 개념을 도입하고, 이에 대한 정부지원 등 제한, 공공입찰 시 불이익 부여, 신용제재 확대·강화 및 출국금지, 반의사불벌죄 적용 제외 등 제재조치를 더욱 강화와 함께 상습적으로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업주에게는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등의 3배 이하 금액을 지급하도록 근로자가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의 적용범위를 재직 중인 근로자까지 확대함 (안 제37조)
- ② 상습적으로 임금등을 체불하는 사업주(이하 “상습체불사업주”라 함)의 임금등 체불자료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3조의3)
- ③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 및 지원 제한 등을 위하여 해당 상습체불사업주의 임금등 체불자료를 국가등이 요구할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제공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3조의4 신설)
- ④ 상습체불사업주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 등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안 제43조의5 신설)
- ⑤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 및 지원 제한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안 제43조의6 신설)
- ⑥ 고용노동부장관이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하여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3조의7 신설)
- ⑦ 체불임금 등에 대하여 법원에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등의 3배 이하의 금액을 지급청구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3조의8 신설)
- ⑧ 임금채권의 시효를 5년으로 연장함 (안 제49조)
- ⑨ 근로감독을 위한 사업장 선정 등과 관련하여 관계기관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안 제102조의2 신설)
- ⑩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해 임금체불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제외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안 제109조 제2항)

국토교통위원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의원 등 10인)

2024-08-09 발의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무보험·뺑소니·낙하물 사고 등에 책임보험으로 보상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정부가 책임보험료의 일정 부분을 기금으로 조성하여 피해금액을 보상하고 있음

그런데 정부보장사업의 범위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발생한 생명·신체 손해에 한정하고 있음. 따라서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등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서는 보장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정당한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무보험·뺑소니·낙하물 사고에 의한 정부보장사업의 보장범위를 생명·신체 손해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까지 보상하되, 경찰에 피해가 신고된 경우에 한정하여 가해자를 통한 사고사실확인과 보상금 회수가 가능한 무보험사고는 전범위에 걸쳐, 가해자를 몰라 사고사실 확인이 어려워 허위청구 가능성이 있는 뺑소니·낙하물 사고는 대인손해를 동반한 건만 대물보상을 하려는 것임 (안 제30조제1항 등)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1. 상임(특별)위원회 일정

구분		일시	내용
법사위	전체회의	8/14(수) 10:00	- 검사(김영철)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
교육위	의학교육소위 (복지위 연석회의)	8/16(금) 10:00	-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 - 의과대학의 발전을 위해 교육부 청문회 요청에 관한 청원
과방위	전체회의	8/14(수) 10:00	- 불법적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2차 청문회
외통위	전체회의	8/13(화) 14:00	- 소위원회 구성 - 2023회계연도 결산 상정 -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상정 - 법안·결의안·청원 상정 - 현안질의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토론회 및 세미나	8/12(월) 07:30	국회 건강과 돌봄 그리고 인권 포럼 연속 세미나 - 장애인 권리 패러다임의 변화	전진숙·이수진 의원실 등	의원회관 4간담회의실
	8/12(월) 10:00	'개미투자자보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김남근·박주민 의원실 등	의원회관 2세미나실
	8/12(월) 10:00	대한축구협회 개혁 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토론회	이기현·강유정 의원실 등	의원회관 8간담회의실
	8/12(월) 10:00	불법사채 피해 방지를 위한 서민금융지원 강화 토론회	천준호 의원실, 민 생연대 등	의원회관 9간담회의실
	8/12(월) 10:00	외투기업의 '먹튀' 문제와 한국유통테크사태 해결을 위한 국회토론회	이용우·김주영 의원실 등	의원회관 2소회의실
	8/12(월) 14:00	"STOP, 사이버불링" : 대한민국에서 사이버불링을 멈추기 위한 간담회	김영배 의원실	의원회관 3세미나실
	8/12(월) 14:00	국민연금 파헤치기 CHAPTER I - 국민연금이 처한 현실과 나아갈 미래	이주영 의원실	의원회관 2간담회의실
	8/12(월) 14:00	가축분뇨 대란 위기 대책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	이원택 의원실	의원회관 8간담회의실
	8/12(월) 14:00	성공적인 모바일 주민등록제도 도입을 위한 국회정책 세미나	김성희 의원실 등	의원회관 3간담회의실
	8/12(월) 14:00	아리셀 화재 유사 사고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화성공장 화재 대책과 개선 방향 토론회	용혜인 의원실	의원회관 2소회의실
	8/13(화) 08:00	경제는 민주당! : 제2강 양극화 현상과 서민 경제의 실상	김태년·강훈식 의원실 등	의원회관 1소회의실
	8/13(화) 10:00	경찰·소방 중간 간부 제도 개혁 국회 토론회	진선미·임호선 의원실 등	의원회관 2세미나실
	8/13(화) 10:00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확대 적용과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	김주영·안호영 의원실 등	의원회관 1소회의실
	8/13(화) 10:00	홍준표식 대구·경북 행정통합 무엇이 문제인가?	임미애·차규근 의원실 등	의원회관 3세미나실

	8/13(화) 12:00	대전환의 시대, 기본사회로의 방향과 전환	황명선·박주민 의원실 등	의원회관 302호
	8/13(화) 14:00	우리 아이 SNS 안전지대 3법 토론회	조정훈 의원실 등	의원회관 1소회의실
	8/13(화) 14:00	전국 초등의대반 선행교육 운영실태를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강경숙 의원실 등	의원회관 2세미나실
	8/13(화) 14:00	항일독립운동 기점 정립을 위한 국회토론회	윤준병·정동영 의원실 등	의원회관 3세미나실
	8/14(수) 14:00	글로벌중추국가 비전구현을 위한 상무정신 고양방안	유용원 의원실	의원회관 1소회의실
	8/16(금) 10:00	가짜뉴스 방지하는 플랫폼! 공적책임 강화 정책토론회	김장겸 의원실 등	의원회관 3세미나실
	8/16(금) 10:00	토론 증권의 미래 : 금융혁신의 새로운 장을 열다	조정훈 의원실	의원회관 2세미나실
자료집 등	8/14(수)	「이달의 입법민원」 (2024. 7월호) 발간	국회사무처	
	8/12(월)	「THE 현안」 제23호 발간 - 극한기후와 자연재해	국회도서관	
	8/13(화)	「최신외국입법정보」 제252호 발간 - 미국의 고령자 보호를 위한 금융서비스 입법례		
	8/14(수)	「금주의 서평」 제691호 발간 - 도서명 : 중독의 역사 저자 : 칼 에릭 피셔		

※ 위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들은 추후 제공 예정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247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자료집 등	8/7(수)	최근 현재결정과 개정대상 법률 현황 (제2024-6호)」 발간	국회사무처	
	8/6(화)	「THE 현안」 제22호 발간 - 이상기온과 1.5°C 임계점	국회도서관	
	8/7(수)	「World & Law」 2024-14호 발간 - 마약 범죄 사각지대, 셀프 마약 처방 방지하려면?		
	8/7(수)	「금주의 서평」 제690호 발간 - 도서명 : 이주, 국가를 선택하는 사람들 저자 : 헤인 데 하스		
	8/8(목)	「현안, 외국에선?」 제88호 발간 - 프랑스 영농형 태양광 제도		
	8/9(금)	「예산춘추」 통권 제75호 발간	국회예산정책처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08.05~08.11)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시	분야	내용
8/8(목)	일본	라이선스 조항에 대한 일본 판결 (2)

입법전략자문그룹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그룹(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Group)은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와 함께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실무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관 및 규제대응업무 전문팀입니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춤형 Total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해 “법률 제·개정 사항과 동향 파악,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문서의 내용(인쇄본 또는 전자문서) 및 이를 이용하여 편집한 내용은 제3자에게 공유하실 수 없으며,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유) 세종과 미리 상의하여 동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백대용 | 변호사

[프로필보기](#)



장대섭 | 고문

[프로필보기](#)



김광재 | 변호사

[프로필보기](#)



김성범 | 변호사

[프로필보기](#)



안현정 | 변호사

[프로필보기](#)



방세희 | 변호사

[프로필보기](#)



성재열 | 변호사

[프로필보기](#)



조성환 | 변호사

[프로필보기](#)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